

Ⅱ - 36	제 목	사무실 인정여부(1)(콘테이너)		
회신일자	2003년 2월 24일	회신방법	산자부 사이버민원실	
의 요 지				
○ 2003년도부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이 변경되며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협회에 문의결과 자본금이 증액되었고, 사무실면적이 추가되면서 사무실로 등록되어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의 종류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예를 들어 주차장 부지에 일반 가설건축물인 콘테이너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무실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를 정확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회 신 내 용				
답변)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에 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3에서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가 적합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전기공사업법상의 사무실로 인정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